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5-337
------------	-------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사편찬을 위한 위원회 역할 규정(안 제2조)
- 나. 효율적인 시사편찬을 위한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의 자격 기준 마련(안 제10조)
- 다.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 보수 기준 마련(안 제10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시사(이하 “시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두천문화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역사·향토사 및 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해촉 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 ①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과 보조연구원 각 1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시사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1. 상임위원 : 향토사학·역사·지리 관련 분야 석·박사 또는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

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보조연구원 : 향토사학·역사·지리 관련 분야 전공자

③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보조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7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⑦상임위원과 보조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 · 과		문화체육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문화체육과장 김 진 왕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문화예술담당 장 화 자
	담당자 성명 · 전화	권 영 선 860-2070, 2063